

6.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

제정 : 1974. 9.

개정(제23차) : 2020. 6. 30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7장(학위논문)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, 제출, 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

가. 석사학위과정

1.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2.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
3.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. 다만, 휴학 및 제적 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나. 박사학위과정

1.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2.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
3. <삭제>
4.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. 다만, 휴학 및 제적기간,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다. 통합과정

1.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)에 합격한 자
2.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
3. 정규등록 6학기를 필한 자
4.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. 다만, 휴학 및 제적기간,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학위논문)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.

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한다. 단, 영어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 학과로 대학장이 대학원에 요청한 경우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 그 외의 학과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이 최종 승인한 경우, 국문,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